

우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건설협회와 조달청간 업무협력 약정

해외건설협회와 조달청(이하 “해건협”이라 한다)은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유기적인 업무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 약정(이하 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의 목적은 조달청에서 지정한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 중소기업(이하 “G-PASS기업”이라 한다) 및 해외건설 기업들 간 해외 조달시장 동반 진출을 통한 상생 발전과 국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해건협과 조달청(이하 함께 지칭될 경우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의 지원·협력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.

제2조(협력내용 및 범위) 양 기관은 다음 항목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 하며,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항목별 세부 사항과 조건 등을 별도로 협의·진행한다.

- 가. 해외 조달시장 관련 동향 정보 제공 협력
- 나. 해외 조달시장 관련 조사 및 공동 연구 협력
- 다. 해외 조달시장 개척단 파견 및 발굴 협력
- 라. 해외 조달시장 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관련 협력
- 마. 해외 발주처, 조달기관 초청행사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관련 협력
- 바. G-PASS 기업의 해건협 회원 가입 관련 협력 및 지원
- 사. G-PASS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동반 진출 및 상생발전에 기여한 해외건설사업자의 국내 공공 조달시장 참여시 지원방안 강구 및 지원
- 아. 양 기관에서 지정·인정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촉진 및 애로사항 해소 위한 협력·지원
- 자. 기타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관련 홍보 및 협력

제3조(사업성과의 활용) 양 기관은 협력 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공유하며, 대외 홍보 시에는 양 기관의 명의를 병기하여 공동의 성과물임을 밝힌다.

제4조(신의성실의 의무)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약의 이행에 상호 협조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사전에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이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업무상 비밀 및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.

제6조(세부사항 합의) 양 기관은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합의한 업무협조의 상세한 범위, 방법 및 절차와 비용지급 및 권리의무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.

제7조(효력 및 해지 또는 내용변경) 본 협약의 효력 및 해지 또는 내용변경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- 가. 이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며, 어느 일방이 종료 1개월 전에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.
- 나. 양 기관은 협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.

제8조(기타사항) 이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과 양 기관 간 협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각 사안에 따라 양 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국문으로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6월 28일

이 건 기

해외건설협회
회장 이 건 기

제 무 경

조 달 청
청장 정 무 경